

과학기술 및 학술 연구보고서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입법론*

- 저작권법상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제도와 연계를 중심으로 -

강선준* 원유형**, 최 산***, 김준혁****, 김슬기*****

I. 서론

국가가 보유한 각종 행정정보에 대한 민간의 새로운 서비스·상품 개발을 위한 활용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 기기의 대중화로 모바일용 애플리케이션 개발이 활성화되면서 교통·기상·과학기술정보 등 국가정보자원이 신규 비즈니스 창출에 핵심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세계 각국 정부¹⁾는 공공정보를 민간에 적극 개방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를 개발·유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우리정부도 지난 몇 년간 정부의 공공정보(이하 ‘공공데이터라 한다’)가 중요한 가치창출의 기반임을 인지하고 공공데이터 공개, 개방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국가정보자원을 개방하여 공공 및 민간이 공유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공유자원포털(www.data.go.kr)을 2011년 7월 오픈하고 활용 가능한 국가공유자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또한,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공유하며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소통·협력함으로써,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창조 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인 3.0을 국정 중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일반적 정보 공개 시스템인 정부 1.0과 제한된 공개 및 참여 시스템이었던 정부 2.0과는 달리 공공기관의 공개·개방 의지와 소통·협력 노력을 강조한 정부 3.0이 국정과제로 공표가 되었으며 이에 따라 공공정보 개방 체계 정비, 국민맞춤형 정보공개 확대, 공공데이터 개방²⁾ 등 국민의 정부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다양한 정책

* 강선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정책기획팀장,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부교수, 법학박사, 주저자

** 원유형,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정책실장, 과학기술정책학 박사

*** 최산,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석사과정, 교신저자(G14504@kist.re.kr)

**** 김준혁,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석사과정

***** 김슬기,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석사과정

※ 이 논문은 ‘과학기술정보서비스 및 학술 연구보고서 제공을 위한 현행법제의 한계와 개선방향’의 일부내용을 수정·보완하였으며,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및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의 공식견해가 아닌 필자들의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드립니다.

1) 미국은 「정보자유법」을 제정하여 교통, 환경, 교육 등의 정보자원에 대한 제공 근거와 통합제공창구(www.data.gov)를 마련하였으며 영국은 「공공정보 재이용 규칙」을 제정하여 정보자원 제공을 확대하고, 통합제공사이트(www.data.gov.uk)를 오픈하였다. http://www.gov30.go.kr/gov30/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55&mId=4&dId=3&ntfId=2473, 2015년 1월 4일 21시 방문.

2) 새로운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인 「정부 3.0」의 핵심과제로 “공공정보 공개” 및 “공공데이터 민간 활용 활성화”를 중점 추진하고 있다. “공공정보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식품·위생 등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보나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예산집행내용 등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등을 문서생성 즉시 원문정보 형태로 공개하는 것이다. “공공데이터 민간 활용 활성화”

이 시행되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2013년 12월 범정부 차원의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1,087종 중 12,654종(60%)의 데이터를 2017년까지 개방³⁾하는 정책을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 의결로 결정하였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연구자간 협력을 유도하고 데이터 공동활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 중심의 빅 데이터 분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오픈 사이언스 랩(Open Science Lab), 사이언스 데이터 맵(Science Data Map)을 시범 구축하고 소관 부처별로 산재된 국가R&D 관련 과학기술데이터를 표준화된 방식으로 등록, 관리, 유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범 구축하는 등 LOD(Linked Open Data) 기반의 국가R&D정보를 공개하고 개방 하고 있다.

이러한 법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정보공개법」을 개정하고('13.11 시행) 「공공데이터법」을 제정('13.10 시행)하였다. 공공데이터 개방·활용을 촉진하는 법령을 재개정할 뿐만 아니라 「공간산업진흥법」, 「통계법」, 「발명진흥법」, 「저작권법」 등 12개 법령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보의 공유·개방의 활성화와 더불어, 시맨틱 웹 등 최신 IT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정보공개 방법도 진화하고 있다. 또한,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뉴미디어의 확산은 새로운 형태의 전자적 정보서비스의 제공을 요구하고 있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대표적인 과학기술정보인 연구보고서⁴⁾ 대부분은 공공기관인 출연(연)이 업무상 창작하였거나 제3자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공공저작물의 민간 개방 추세에 따라 공공기관이 저작권자인 공공저작물을 관련 지식재산권 법제 하에서 민간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따라서 연구보고서 등 공공데이터 공개와 이를 보호하는 법익인 지식재산권 분야에 있어서 창작자의 권리(author's right)와 이용자의 권리(user's right)를 균형 있게 보호하는 것이 중요한 이슈로 급부상 하고 있다.

지식재산권인 저작물로 보호를 받는다 할지라도 국가안보나 개인정보보호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국민의 세금에 의해 작성된 과학기술 보고서 등은 가급적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하여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우리정부는 2014년 7월 저작권법 등 관련법령 개정으로 출연(연) 보유 공공저작물은 일반국민이 이용 허락 없이 자유롭게 활용 가능한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저작권 법제가 사적이익을 적절하게 보상할 수 있고, 이러한 저작물 등은 다수가 공유할수록 사회의 후생이 증가하므로 양자의 이익을 조화롭게 배분이 가능한 상생의 방법을 찾는 노력 중의 하나이며 이러한 노력이 저작권 분야의 불필요한 분쟁을 소멸시키고,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음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공공기관인 출연(연) 등에서 국가연구비가 투입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으로 수행한 연구보고서 등을 과학기술정보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경우 창작자의 권리(author's right)와 이용자의 권리(user's right)를 균형 있게 보호하기 위한 지식재산권 법제와의 관계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는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을 통해 민간의 수요가 많고, 파급효과가 큰 공공데이터부터 단계적 개방하여 국민과 기업이 상업적으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3) 연도별 개방계획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5년 2,408종, 2016년에는 2,593종까지 공공데이터 개방범위를 확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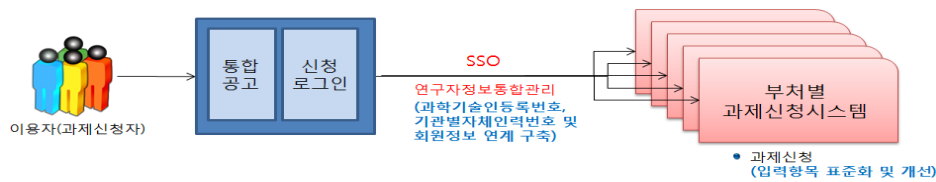
4) 연구보고서의 경우도 연구자 개인의 작품이지만 온전히 연구자 자신만의 독창적인 것이 아니라 인류의 문화유산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 이용을 오로지 저작자의 자의에만 맡겨두는 것이 공정한 것인가라는 의문에서 공정이용의 예외, 존속기간의 제한, 강제허락 등 저작권법 규정이 입법화 되었다. 신주영(2012), “저작권 침해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 「저스티스 통권 제131호」(한국법학원), p.101.

II. 국내외 과학기술정보서비스 현황

1. 과학기술정보 서비스 고도화 필요성

국가연구개발 정보의 개방·공유·협력 강화로 국가과학기술의 가치는 극대화할 수 있으며 연구 성과물 및 관련 DB의 공유는 다 학제적 융합연구를 활성화하는 측면이 있다.

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에 등록된 연구자간의 협업정보를 바탕으로 국가연구개발 연구 생태계를 파악할 수 있는 연구자맵이 더욱 중요한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 출처 : 2014년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세부추진계획(안), (2014.5)

[그림 1 연구자 DB 통합 및 과제신청 창구 단일화 시스템 개요(NTIS 활용)]

연구자맵이란 연구자간의 협력네트워크(분야별 연구자 그룹, 산·학·연 간 협업관계 등)를 가시화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 연구자맵이 효율적으로 구축이 된다면, 과학기술정보 서비스를 활용하여 연구과제신청 시 연구자의 접근 편의성 제고와 과제 공고에서 성과까지 단절 없는 국가연구개발 정보 제공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연구자들이 현장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범부처 연구 과제신청 일원화 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선진국이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서비스들에만 의존하지 않고 국내 플랫폼을 고도화하는 것이 연구보안과 국내저널의 활용도 제고 면에서 더 효율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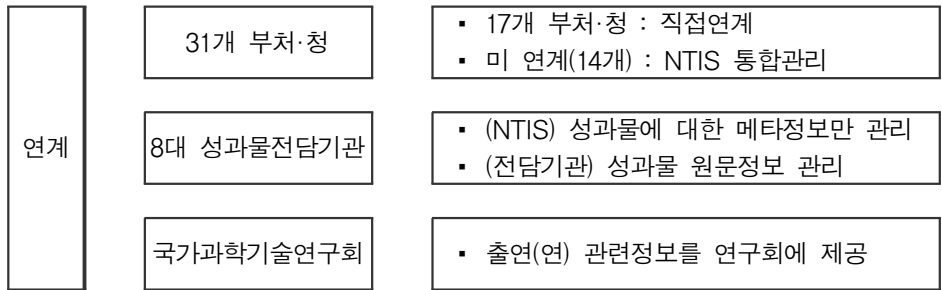
출연(연)의 시대적 임무인 기업지원을 위한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벤처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최적의 국가연구개발 및 지식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 등을 통하여 창조경제의 실현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2. 국내과학기술정보 서비스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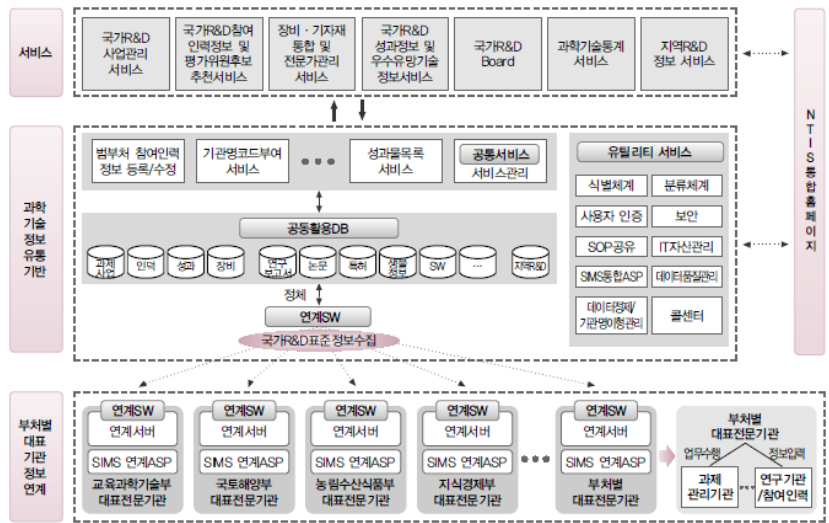
1) 국가과학기술정보 서비스 (NTIS : National Science&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

우리 정부는 17개 부처·청과의 연계를 통해 연구과제, 인력, 시설·장비, 성과 등 약 107만 건에 달하는 세계 최초 국가연구개발 정보를 제공하는 지식포털인 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를 구축 하였다.

국가 원천 연구개발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연구자들의 협력네트워크를 파악할 수 있는 연구자맵 서비스를 제공하며 범부처 과제신청 원스톱 서비스를 통하여 맞춤형 국가 연구개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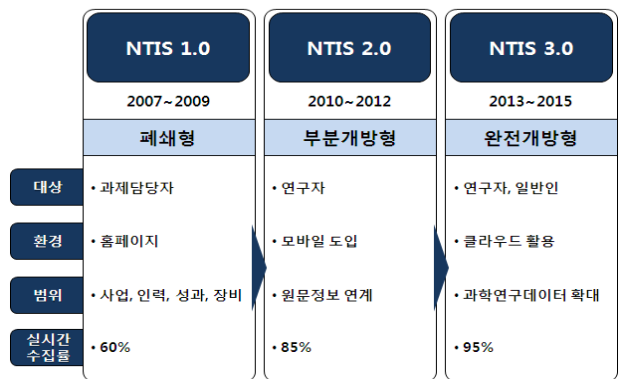


[그림 2 NTIS 정보연계 현황]



[그림 3 부처별 NTIS 정보연계 및 구성도]

※ 출처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10년 정보유통본부 업무보고 워크샵, (2010.2)



[그림 4 창조·공유의 NTIS 3.0 추진단계]

※ 출처 : 2014년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세부추진계획(안), (2014.5)

최근의 활용 동향을 살펴보면 「2014년 제1차 국가연구개발 정보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창조·공유의 NTIS 3.0” 2단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14년 5월 7일 NTIS 세부추진계획(안)”을 확정·발표하였다.

국가연구개발정보서비스는 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 등 범부처 업무 지원 및 범부처 차원의 공통 업무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예시적으로는 국가R&D 유사 중복과제 검색, 범부처 제재정보, 평가위원 후보 풀 등을 제공하고 있다.

[표 1 NTIS의 주요 서비스]

구분	주요내용
국가R&D 사업	▪ 국가R&D사업·과제('02년~) 관련정보 (과제 목록, 연구내용, 참여연구자 등)
연구자	▪ 국가R&D에 참여한 연구자(11만명) ▪ 평가위원(약 3만명 후보풀) 정보
연구시설·장비	▪ 정부 R&D예산(3천만원 이상)을 통해 구입된 장비 (약 8만 4천점)
연구성과	▪ 국가R&D사업을 통해 창출된 연구 성과 정보

2) 국가과학기술정보도서관 (NDSL : National Digital Science Library)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는 국가과학기술정보도서관을 구축하면서 네덜란드의 스코퍼스(Scopus)등 선진국들의 논문검색 시스템과 유사한 검색시스템을 도입하였다. 해외저널이 아닌 국내 저널의 논문들도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국가연구개발 보고서와 여러 동향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NDSL은 NTIS나 특허정보넷(Korea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formation Service : KIPRIS), 외국 논문검색 서비스 등 자료들을 한데 모아서 통합적인 자료 찾기에 도움을 주는 종합도서관 개념의 서비스로 국내 검색기술의 도입과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3) 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 개방형 유통 플랫폼(NOS : NDSL Open Service)

NDSL 플랫폼을 통해 제공해 온 국내 최대의 과학기술정보를 개개인의 웹 사이트에서 직접 서비스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개방형서비스로 NDSL의 방대한 정보를 매쉬업(Mash up)하여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이다.

< 주요 활용기관 >
국립중앙도서관, 네이버, 다음, 삼성전자 등 100여개 기관에서 활용 중

기관유형	주요기관
대학교	서울대, 중앙대, 경희대, 고려대, 대구한의대, 건국대, 서울시립대, 아주대, 나사렛대, 한경대 등
연구소	한국원자력연구원, 경기개발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간기업	네이버, 다음, 피란, 삼성전자, 하이닉스반도체, 현대자동차, Exelors, LG상남도서관 등
공공기관	JST, 국가지식포털, 디브라리, 산학연협회, 과천시 정보과학도서관, 한국수자원공사 등

< 제공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
전문화된 정보검색, 원문복사신청, 기관별 이용통계 API 제공



[그림 5 NOS 서비스 활용기관 및 개요도]

※ 출처 : 국가과학기술정보센터의 개방형 플랫폼 홈페이지 NOS 소개 자료 (2014.9)

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 개방형 유통 플랫폼(NOS)은 정부 3.0 정책에 부합하는 대표적인 과학기술 분야 서비스로, '07년부터 공공을 넘어 민간에까지 개방돼 활용 중에 있다 '14년 기준으로 약 100여개의 업체와

연계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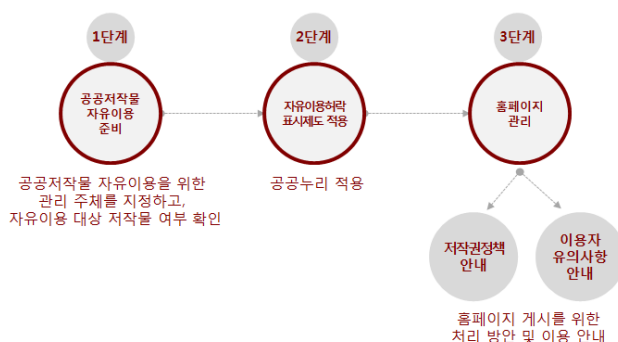
4) 특허정보넷(Korea Intellectual Property Right Information Service)

특허청이 보유한 국내·외 지식재산권 관련 모든 정보를 DB구축하여 이를 개인, 중소기업, 중·대기업 등 일반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검색 및 열람할 수 있도록 한국특허정보원이 운영하는 대국민 특허정보 검색 서비스⁵⁾이다.

국내외 특허/실용신안, 심판, 디자인, 상표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서비스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 12개국의 특허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초보자 및 전문가 모두 검색이 가능한 Tool을 사용하고 있으며 지재권분쟁 대응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5) 공공누리(Korea Open Government License : KOGL)

공공누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공공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오픈한 한국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라이선스이다.



[그림 6 공공누리 적용 및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절차]

※ 출처 : 공공누리 홈페이지, (2014.9)

즉, 일반국민이 국가가 저작권을 가진 공공저작물을 민간영역에서 활용하여 문화적·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 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공공누리에는 어문 저작물(2,524,654건), 공공기관 저작물(총 7,639,793건)⁶⁾과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 12개국의 특허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3. 국외과학기술정보 서비스 현황

1) SCI(Science Citation Index)

미국 과학정보연구소(Institute for Scientific Information :ISI)에서 1960년에 도입한 인용 색인 시스템으로

5) <http://www.kipris.or.kr/khome/kipris/kipris.jsp> 2015.1.18 방문.

6) 한국문화정보센터 2013년 공공저작물 현황 및 수요조사(수행기관 : 코리아리서치)의 저작물 건수를 기준으로 산정 하였다.

Thompson Scientific이 소유하고 있으며 여러 기준을 만족하는 우수한 학술지를 SCI, SCI(E) 등에 등재하고 '14년 9월 현재, 약 12,000여개가 등재되어 있다.

논문의 피인용수로 저널의 우수함을 판단하는 Impact factor(총 피인용수/총 논문 수) 개념을 도입하여 어떤 고객이 어떤 논문을 인용했는지, 피인용 되었는지를 데이터화 한다.

2) 美國 NTIS(National Technical Information Service)

미국 상무성(US Department of Commerce)산하의 과학기술정보센터에서 미국정부의 후원 하에 수행된 각종 연구개발 및 기술보고서와 해외주요 기술보고서를 수집 정리하여 DB화 한 후 공급하는 세계최대 정보서비스이다.

과학기술정보센터에는 상무부 산하 1명의 의장과 4명의 비서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연구개발과제관리 지원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 성과물 공유 및 활용에 중점을 두었다는데 특징이 있다.

에너지, 원자력공학, 항공학, 천문학, 천체물리학, 토목공학, 통신, 전자, 재료공학, 천연자원, 해양과학, 물리 등 거의 전 주제 분야가 망라되어 있다. 동 시스템에서는 미국 정부 및 연방기관 약 200여개의 연구보고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1991년 제정된 「American Technology Preeminence Act (Public Law 102-245)」에 따라 모든 연방기관들은 연방 펀드로 이루어진 과학, 기술, 공학관련 연구 성과물을 일반 공개 후 15일 이내에 제출토록 의무화 되어 있다.

3) CORDIS(Community Research and Development Information Service)

유럽연합 출판국(EU Publications Office)의 CORDIS Unit에 의해 운영 되는 EU 연구개발정보 서비스로 연구과제 정보, 연구자 그룹 정보 등을 제공하며 연구자 네트워크를 통해 연구자간 협업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CORDIS는 연구 과제정보, 연구관련 대외정보, 연구자 그룹정보(1만 여명의 연구자와 200여개 연구자 그룹) 및 유럽의 다양한 국가에서 수행된 연구과제와 성과 등을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6개 언어로 서비스하고 있다.

4) SCOPUS

네덜란드 엘스비어(Elsevier)사가 2004년에 만든 전 세계의 우수 학술논문 인용지수이다. 역대 최대의 색인-초록 DB로, 2004년 13,000개 저널 타이틀과 27만 건의 레코드로 시작하여, 현재는 21,000개 저널과 50만 여 건의 레코드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2015년 현재 전 주제 분야를 포괄하는 약 5만권의 책, 6만 5천 건의 학술회의자료와 24만 건의 특허 검색이 가능하다.

ORCID(Open Researcher and Contributor ID, 연구자/저자 고유 식별 번호)시스템을 이용해 상세한 저자정보와 연구자 일련번호를 제공하고, 연구자 간의 정보교환을 촉진하고 있다.

5) 일본 정부부처공통 연구개발 관리시스템(e-Rad⁷⁾)

일본 문부과학성의 과학기술정책국에서 관리하는 정보서비스로 각 부처, 배분기관, 연구기관, 연구자들의 연구개발 관리 관련서류의 온라인 전자화, 응모접수 등 일련의 연구개발 관리업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공적 연구비 보조금 중심으로 연구개발 관리에 관한 ①접수, ②심사, ③채택, ④과제관리, ⑤성과보고 등 일련의 프로세스를 관리한다.

동 시스템의 주요서비스로는 과제관리 프로세스 지원, 연구자금 중복 지급 관리, 연구자번호 발급(약 55만 명) 등이 제공되고 있다. 또한 연구자 소속기관의 정보시스템, KAKEN, ReaD Research map, J-GLOBAL 등의 시스템과 연계되어 있으며 연구자정보 및 성과정보를 정책 수립을 위한 과학 데이터베이스로 활용되고 있다.

[표 2 국내외 과학기술정보서비스 비교]

구분		한국(NTIS)	미국(NTIS)	EU(CORDIS)	일본(e-RAD)
특징		정부 및 일반국민까지 서비스 제공 R&D 지식포털	연구자 중심으로 서비스 연구성과물 중심	연구자 중심으로 서비스 연구성과물 중심	정부 내에서만 활용 과제전주기 지원
운영주체	부처 (운영 기관)	미래부 (NTIS사업단)	DOC	유럽연합 (EU Publications Office)	문부과학성
주요 서비스	범위 (대상)	범부처 R&D (과제관리기관: 125개)	연방정부 R&D (과제관리기관: 14개)	EU의 R&D	범정부 R&D
	과제	○	○	○	○
	인력	○	X	○	○
	성과	○	○	○	○
	장비	○	X	X	X
	업무 지원	조사·분석·평가			과제 전주기
	기타	과학기술통계, 기술산업, 지역정보 제공	-	-	-
법제도		과학기술기본법 공동관리규정	ATPA	없음	없음
서비스 대상		부처 과제관리기관 산학연 연구자 일반사용자	연방정부 산학연 연구자	산학연 연구자 과제참여 희망자 등	부처 과제관리기관 산학연 연구자

※ 출처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내부자료

7) 부처공통 연구개발 관리시스템의 약칭으로 Research and development(연구개발)의 머리글자에 electronic(전자) 머리글자를 더한 것이다.

III. 과학기술정보서비스 제공 관련법제 검토

1. 과학기술정보 서비스 제공과 지식재산(저작권) 보호

국가과학기술정보는 NTIS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일반국민까지 공개가 확대(‘13.4)되었고, 이용자 활용도가 28% 증가하는 등 국가연구개발비가 투입된 연구 성과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활용에 대한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국정 운영의 중심과제로 정부 3.0 및 창조경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국정철학의 시행으로 추진되는 과학기술데이터 공개포털⁸⁾이 구축되면 이용자에게 연구개발(R&D) 정보 공개·개방이 더욱 확대되고, 연구성과 및 실험데이터와 같은 과학기술 빅 데이터(거대자료) 정보를 언제든지 공유할 수 있고 활용이 가능하게 된다.

정보, 아이디어, 보고서 등 지식산출물재산권은 정보의 비유전성(non-approachability)과 소비의 비효용성(non-rivalry)을 가지고 있다. 즉, 생산비용(시간, 노력, 교육)은 많이 들지만, 제3자에게 이전하는 비용은 별로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배제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면 할수록 사회 전체의 효용은 커진다.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 성과물로 창출된 보고서 등은 저작물로 보호를 받는다 할지라도 국가안보나 개인 정보보호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국민의 세금에 의해 작성되었기 때문에 국가과학기술 발전 등에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과학기술정보인 연구보고서 대부분은 공공기관인 출연(연)이 업무상 창작하였거나 제3자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공공저작물의 민간 개방 추세에 따라 과학기술 정보 및 연구보고서를 민간 기업 등과 공유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지식재산의 활용 측면도 중요하지만 지식재산의 창출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식을 창조하고 개발한 자의 창의적인 노력의 결과를 보호해야 한다.

우리 헌법에서도 이에 대한 법적 정당성을 확보해주기 위하여 “자유로운 지식과 정보의 창조와 개발을 보장하는 한편, 그 결과로서 발생한 성과물의 소유 및 이용과 관련하여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제22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연구비가 투입된 과학기술정보서비스 관련 지식재산권 창작자와 이용자의 권리¹⁰⁾를 조화롭게 입법화 하는 것은 지식재산권 법제의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우리정부는 2014년 7월 저작권법 등 관련법령을 개정하여 출연(연) 보유 공공저작물은 일반국민이 이용 허락 없이 자유롭게 활용 가능한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제도 시행하고 있다.

8) 과학기술데이터 공개포털은 부처별로 산재된 국가R&D 관련 과학기술데이터를 표준화된 방식으로 등록, 관리, 유통하는 서비스이다.

9) 신주영 (2012), “저작권 침해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 「저스티스 통권 제131호」(한국법학원), p.97
법 경제학적인 관점으로 살펴보면 정보, 발명 등 가치 있는 자원의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의 적절한 생산을 위해서 선택한 정책이 지식생산물에 재산권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즉, 생산물의 생산자들에게 복제와 배포의 독점적인 권리를 인정하고 그 산출물을 구매자들이 경쟁자로 등장하는 것을 차단하여 생산자가 투자의 정당한 대가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디지털 혁명에 의한 저작물의 디지털화와 파일공유기술은 저작물의 이전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었고 유체물에 의한 복사와 배포만 가능했던 환경 하에 만들어진 저작권 제도의 내용을 재검토하는 동인(動因)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10) 김중보 (2005), “지식재산권 강화경향과 정보공유와의 관계에 대한 고찰 - 헌법이념상 저작권개념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제46권 제1호」,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p.89~12.

저작권법이 사적이익을 적절하게 보상할 수 있고 이러한 저작물 등은 다수가 공유할수록 사회의 후생이 증가하므로 양자의 이익을 조화롭게 배분이 가능한 상생의 방법을 찾는 것이 저작권 분야의 시대적인 과제이다.

공공기관인 출연(연) 등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으로 수행한 연구보고서 원문 등을 과학기술정보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경우를 중심으로 관련 법제를 분석하고 향후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하 이에 대하여 세부적인 내용과 입법(안) 등을 검토하기로 한다.

2. 과학기술정보 서비스 관련 법령(II) : 헌법 및 과학기술법제

1) 헌법

우리헌법 제127조 제1항에서는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 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기업의 창의, 과학기술 혁신 등을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노력해야 할 책무를 국가적 과제로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국민경제 발전의 범주 내에서 과학기술정보 서비스 제공의 헌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

2) 과학기술 관련법제

(1) 과학기술기본법

과학기술기본법은 과학기술 전반에 대한 선언적 규정을 가진 기본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동 법에서는 과학기술정보 서비스 관련하여 과학기술지식·정보 등의 관리·유통을 직접 규정하거나 정부의 역할, 의무를 추진하도록 간접적으로 규정한 조항 등이 다양하게 규정되고 있다.

즉,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정보의 생산·유통·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제26조 제1항). 이에 대한 다양한 시책으로 ①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정보의 수집·분석·가공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②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③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정보의 관리·유통기관의 육성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다음과 같이 여러 조항으로 과학기술 정보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유통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원할 기관(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제26조 제3항).

과학기술 관련 지식·정보가 원활하게 관리·유통될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 보호제도 등 지식가치를 평가하고 보호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제26조 제2항).

정부는 각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동 사업의 정보관리, 성과관리 등 연구수행의 기반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제11조 제3항).

또한,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에 관한 정보의 관리·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제16조의3 제1항).

(2)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은 정부가 추진하는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 활동을 성과 중심으로 평가하고 연구성과를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함으로써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 및 책임

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입법화 되었다(제1조).

성과평가의 결과를 관련 정책의 수립, 사업의 추진 및 예산의 조정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연구성과가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 의무를 부과하는 등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의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있다(제3조).

또한, 간접적으로 과학기술정보 서비스를 활용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연구개발사업의 성격을 감안하여 사업의 기획 시 국내외 특허동향, 기술동향 및 표준화 동향을 조사하여 그 반영 여부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이라 한다.)은 「과학기술기본법」규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만든 대통령령이다.

연구개발결과의 공개와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출받은 연구개발 최종보고서 및 요약서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관련 연구기관 산업계 및 학계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널리 공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제18조제1항).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 및 이에 따른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하여 연구개발결과의 정보가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8조 제2항).

그러나, 보안과제로 분류된 경우(3년 이내) 혹은 지식재산권의 취득을 위하여 공개요부를 요청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승인한 경우(1년 6개월 이내), 참여기업의 대표가 영업비밀 보호 등의 정당한 사유로 비공개를 요청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승인한 경우(1년 6개월 이내) 비공개할 수 있으며, 비공개 연장이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아 최대 3년의 범위에서 요청할 수 있고 최종보고서·요약서의 전자문서는 고유번호별로 전산관리토록 하고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 무형적 결과물을 개발한 연구기관의 단독 소유로 하고,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그 무형적 결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기관의 공동 소유로 규정하고 있다(제24조 제2항).

즉,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하게 될 기관이 국외에 있는 경우 또는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할 의사가 없는 연구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함께 연구를 수행한 연구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24조제2항 단서 및 제3항~제5항).

과학기술정보 서비스 관련해서는 별도의 장으로 구분하여 제5장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 및 정보관리에서는 연구개발정보의 관리 및 국가연구개발정보관리위원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연구개발정보의 관리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정보 관리계획을 과학기술지식·정보 등의 관리·유통에 관한 시책에 따라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제25조제1항).

또한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연구기관 등에게 연구개발정보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국가연구개발정보표준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상호연계 및 표준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연구개발과제의 정보, 참여연구원의 정보, 평가위원 및 평가결과 등 전문기관의 운영하는 정보관리 시스템을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시키도록 하고 있다(제25조제2항~제3항).

2. 과학기술정보 서비스 관련 법령(II) : 지식재산법제(저작권법 등)

1) 저작권법

(1) 공동저작물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등에서 발명자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수행한 연구기관들이 보고서가 작성된 경우 연구기관간 공동저작물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공동저작물 관련 규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공동저작물이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으로(제2조 제21호)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제39조).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며 각 저작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에 방해할 수 없다(제15조 제1항). 공동저작물의 저작자는 저작자들 중 저작인격권을 대표하여 행사할 수 있는 자를 정할 수 있으며(제15조 제2항) 권리를 대표하여 행사하는 자의 대표권에 가하여진 제한에 대하여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제15조 제3항).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는 저작권자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며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음 이 경우 각 저작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거나 동의를 거부할 수 없다(제48조 제1항).

공동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이익은 공동저작자 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그 저작물의 창작에 이바지한 정도에 따라 각자에게 배분되며 이바지 정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균등한 것으로 추정된다(제48조 제2항).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는 그 공동저작물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포기할 수 있으며, 포기하거나 상속인이 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지분은 다른 저작재산권자에게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배분된다(제48조 제3항).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는 저작자들 중 저작재산권을 대표하여 행사할 수 있는 자를 정할 수 있으며, 권리를 대표하여 행사하는 자의 대표권에 가하여진 제한에 대하여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제48조 제4항).

공동저작물의 각 저작자 또는 각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저작자 또는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침해의 정지 등 청구를 할 수 있으며(제123조), 그 저작재산권의 침해에 관하여 자신의 지분에 관한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다(제125조).

(2) 도서관 면책조항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운영하는 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경우 「도서관법」상 전문도서관으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에 저작권법상 도서관 면책조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제31조).

도서관 등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그 도서관 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서 등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제31조 제2항).

동시에 열람할 수 있는 이용자 수는 그 도서관등에서 보관하고 있거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그 도서 등의 부수를 초과할 수 없다.

도서관 등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다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서 등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제31조 제3항). 즉,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으로 발행된 도서 등은 그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없다.

도서 등의 복제의 경우에 그 도서 등이 디지털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때에는 그 도서 등을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다(제31조 제4항).

(3) 공공저작물¹¹⁾의 자유이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자유롭게 활용이 가능한 것이 원칙이며,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한 공공누리 표시를 적용한 저작물은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다(제24조의2 제1항).

저작재산권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권으로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저작인격권에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이 있으며 동일성 유지권은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 등이 저작자의 의사와 달리 변경되지 않도록 금지할 수 있는 권리이다.

[표 3 공공저작물 예시 중 과학기술정보서비스 해당 저작물]

□ 공공저작물 예시

- 어문저작물 : 안내책자, 연구보고서, 간행물, 평론, 논문 등
- 편집저작물 : 간행물, 홈페이지, 논문집, 데이터베이스 등
- 2차적저작물 :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

국민은 공공저작물을 자유 이용할 수 있지만 저작물의 동일성 유지권 차원에서 저작물의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제13조).

국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저작권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제24조의2 제2항).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으로는 ① 자유 이용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의 확대 방안, ② 공공저작물 권리 귀속 명확화 등 이용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③ 공공저작물의 민간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④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⑤ 자유 이용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 표시 기준의 적용에 관한 사항, ⑥ 공공저작물 자유이용과 관련된 제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 ⑦ 그 밖에 공공기관의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이 있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제도인 공공누리에는 4가지 유형이 있으며, 과학기술정보 서비스 및 연구보고서 등은 제4유형에 해당하게 되어 이용자가 공공저작물은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나,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2차적 저작물 작성 등 변형하여 이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11) 이외에도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이 표현된 창작물(저작권법 제2조 제1호)로서 다양한 사례가 존재하며 음악저작물, 사진저작물, 도형저작물, 연극저작물, 건축저작물, 미술저작물 등이 있음. 문화체육관광부 (2014),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업무처리요령」(문화체육관광부), p.3. 참조.

유형	마크안	이용허락범위
[제1유형: 출처표시]		· 출처 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제2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 출처 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제3유형: 출처표시+변경금지]		· 출처 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 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그림 6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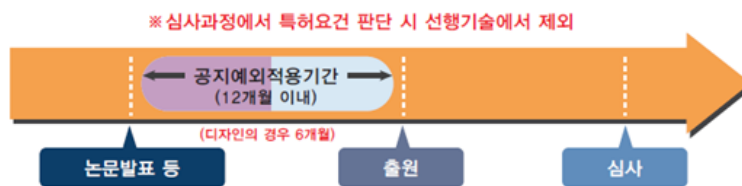
※ 출처 : 공공누리 홈페이지, (2014.9)

2) 특허법

특허의 신규성 의제상실 예외와 연구보고서 발표에 관한 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허법에서는 반포된 간행물 또는 연구보고서에 의하여 게재된 발명, 원칙적으로 공지된 발명에 대해서는 신규성 상실을 이유로 특허를 허여하지 않고 있다(특허법 제30조 제1항 제1호). 다만, 논문발표 등으로 인하여 신규성을 상실한 경우에도 12월내에 출원하고, 출원일로부터 30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공지 예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보고서 논문 발표 이전에 특허출원 전략이 필요하다.

유럽 및 중국 등 해외 일부국가에서는 공지 예외 규정이 없거나 범위가 아주 협소하여 논문 등 발표 이후에 특허출원하는 경우 등록받지 못할 수 있다.



[그림 7 신규성 상실예외와 논문보고서의 특허전략]

※ 출처 : 특허청 홈페이지, (2014.9)

3. 과학기술정보 서비스 관련 법령(III) : 공공데이터 제공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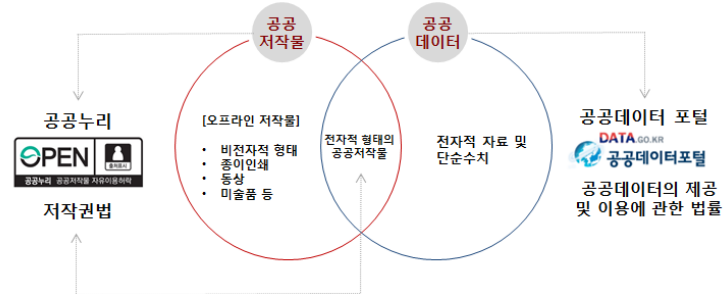
공공데이터는 공공기관이 전자적으로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 등 모든 데이터베이스(DB), 전자화된 파일 등을 의미한다.

공공기관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 법률을 적용받으므로 공공데이터의 범위에 해당하는 공공저작물은 개방이 의무화 되어 있고 이러한 공공데이터는 변경 및 비영리적·상업적 모두 활용이 가능하다(제2조).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지만(제17조 제1항) 해당 내용을 기술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해당 부분을 제외한 공공데이터를 제공(제17조 제2항)하여야 한다.

안전행정부 장관이 제공대상에서 제외된 공공데이터에 대한 정당한 이용허락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시할 수 있고, 공공기관의 장은 그 방안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17조 제3항).



[그림 8 공공누리 및 공공데이터 포털을 활용한 공공저작물·데이터 활용]

※ 출처 : 공공누리 홈페이지, (2014.9)

IV.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¹²⁾

1. 미국

1976년 『저작권법(Copyright Act of 1976)』을 개정하여 미국 연방 정부의 저작물을 저작권 보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양도 및 유증에 의한 경우는 저작권 보호를 받고 있다.

동 법상 ‘미국 정부 저작물’이란, 미국 정부의 관리나 근로자가 그의 직무나 일부로서 작성한 저작물이다(제101조).

저작권의 보호대상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미국 정부의 어떤 저작물도 이 편 법전에 의한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한다. 다만, 미국 정부가 양도, 유증,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이전된 저작권을 인수 또는 보유하는 것은 금지되지 아니한다(제105조).

미국정부는 저작물의 자유이용을 허용함에 있어서 그 이용에서 정부저작물임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그 어떠한 표시는 요구하고 있지 않다.

[표 4 미국 저작권법상 정부저작물과 보호범위]

대상저작물의 법률명칭	입법방식	저작권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정부저작물의 범위	
		연방정부	주 또는 지방정부
미국 정부저작물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	X

2. 영국

국왕 및 의회의 저작권에 관한 일반 조항을 「저작권법(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88)」에 포함

12) 홍재현 (2013), “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 제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4권 제2호」 (한국도서관·정보학회), pp.324~337. 이하 및 공공누리 홈페이지 “국내외 공공저작권 관련 입법례”를 참조하여 재구성.

하고 정부 저작물의 자유로운 접근과 이용을 위해 1999년 “미래의 국왕의 저작권 관리(Future Management of Crown Copyright)” 발표하였다.

정부 웹사이트 상의 정부문서, 과학기술의학 분야 전문가에 의해 생산된 논문, 정부 해명 기사, 수상의 연설문 등은 이용허락 없이 이용이 가능하다.

동법 국왕의 저작권 규정에서는 ① 국왕 또는 국왕의 임직원이나 종업원이 직무 수행 상 제작한 저작물은 저작권 보호자격에 관한 일반적인 요건(제153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며, ② 국왕은 그 저작물에 대한 최초의 저작권자가 된다(제163조).

또한 의회의 저작권 규정에서는 ① 상원이나 하원의 지시나 감독에 의하여 또는 그에 따라 제작된 저작물은 첫째, 저작권 보호자격에 관한 일반적인 요건(제153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며, 둘째 의회는 의회가 제작한 저작물, 또는 그 지시나 감독에 따라 제작된 저작물의 최초 저작권자가 되며, 양원에 의하여 또는 그 지시나 감독에 의하여 제작된 저작물일 경우, 양원이 최초의 공동저작권자가 된다(제165조).

3. 독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등 외부변화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2013년 2월 20일 「고아 저작물 및 절판저작물의 이용과 기타 저작권법 개정을 위한 법률(안)」을 발표하였다.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일반 공중에게 주지시키기 위해 공표된 공공저작물도 저작권 보호대상에서 제외하지만, 출처표시 및 변경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공공저작물상 법률, 명령, 규칙, 고시와 재판 및 공적으로 작성된 판결요지는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한다.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일반공중에게 주지시키기 위하여 공표된 여타 공공저작물에 대하여도 또한 이와 같되, 동법 제62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63조제1항, 제2항의 변경금지와 출처표시에 관한 제한규정이 준용된다(제5조).

또한 오픈 액세스(Open Access)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는 학술저작물의 2차적 이용권에 관한 규정으로 공공기금의 지원을 받아 작성된 학술저작물의 경우, 국민의 자유로운 접근과 이용을 위해 학술저작물의 저작자에게 2차적 이용권을 도입하여 자유이용을 허용한다는 규정이다.

공공기금의 지원에 의한 학술저작물은 주로 공공재원으로 후원되는 프로젝트나 대학의 경우 외부 연구기관의 후원으로 수행된 연구 활동의 결과물로 2차적 이용권을 부여하려는 취지는 세금을 받아 작성된 학습 성과물에 대해 공공기관이 이를 이용하기 위해 학술출판사에 비용을 이증으로 지불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법화 되었다.

동법 제38조 편집물예의 기고 조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최소한 절반이상의 공공기금의 지원으로 연구 활동을 수행하여 작성한 학술저작물이 적어도 연 2회 이상 발행되는 정기간행물에 수록되는 경우, 이 저작물의 저작자는 비록 자신이 출판사나 편집자에게 배타적 용익권을 부여하였다 하더라도 첫 발행 후 12개월이 경과하면 자신의 저작물은 원래 제공한 원본(초고) 버전으로 공중에게 접근을 허용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이러한 공중접근은 영리목적으로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2차적 이용의 경우 첫 발행의 출처를 표시하여야 한다. 저작자에게 불리한 합의는 효력이 없다(제38조)

[표 5 학술저작물의 2차적 이용권 적용 요건]

학술저작물의 2차적 이용권 적용 요건			
①	50% 이상의 공공기금의 지원	⑤	원본버전으로 공중접근 허용
②	연구 활동의 학술저작물	⑥	비영리목적
③	연 2회 발생하는 정기간행물에 수록	⑦	첫발행의 출처표시의 의무
④	첫 발행 후 12개월 경과 후 재이용		

[표 6 국가별 공공저작물 및 공공기금 지원 학술저작물의 저작권 제한 비교]

국가	대상 저작물	입법 방식	내용	법적 근거
미국	미국정부 저작물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미국 정부의 어떤 저작물도 이 편 법전에 의한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함. 다만, 미국 정부가 양도, 유증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이전된 저작권을 인수 또는 보유하는 것은 금지되지 아니함	미국 저작권법 제 105조
영국	정부가 작성한 저작물	범주	저작권 보호 면제에 해당하는 정부저작물의 범주 - 기본법 및 2차법, 법률에 대한 해설, 정부 발행의 고지, 정부양식, 정부자문서, 정부 공식 웹사이트 상의 정부문서, 헤드라인의 통계자료, 정부에 소속된 과학/기술/의학 분야 전문가에 의해 작성된 논문, 수상의 연설문 및 기사, 공공기록보존소에 납본되는 시점에서의 미발행 공문서, 판면배열	미래의 국왕의 저작권 권리 백서(1999) (현행법상 저작권보호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음)
		저작권 보호예외 확대	현행 공공행정 및 보도를 위한 저작권 제한을 관련 있는 제 3자의 문서까지 온라인상에 공유할 수 있도록 허용	영국 저작권법 개정계획안 (2012.12)
독일	공공저작물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법률, 명령, 규칙, 고시와 재판 및 판결요지	독일 저작권법 제 5조 제 1항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일반 공중에게 주지시키기 위하여 공표된 여타 공공저작물에 대하여도 또한 위와 같되, 본법 제 62조 제 1항 내지 제 3항 및 제 63조 제 1항, 제 2항의 변경금지와 출처표시에 관한 제한 규정이 준용함	독일 저작권법 제 5조 제 2항
독일	공공기금으로 작성된 학술 저작물	오픈 액세스 제도 도입	최소한 절반 이상의 공공기금의 지원으로 연구 활동을 수행하여 작성한 학술저작물이 적어도 연 2회 이상 발행되는 정기간행물에 수록되는 경우, 이 저작물의 저작자는 비록 자신이 출판사나 편집자에게 배타적 용역권을 부여하였다 하더라도 첫 발행 후 12개월이 경과하면 자신의 저작물을 원래 제공한 원본(초고_ 버전으로 공중에게 접근을 허용할 권리를 가짐 다만, 이러한 공중 접근은 영리목적으로는 허용되지 아니함. 2차적 이용의 경우 첫 발행의 출처를 표시하여야 함 저작자에게 불리한 합의는 효력이 없음	고아저작물 및 절판저작물의 이용과 기타 저작권법 개정을 위한 법률안 (2013.2) 제 38조 제 4항(신설)

※ 출처 : 홍재현 (2013), 위의 논문, 337면.

4. 일본

일본 「저작권법」은 공공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고 이는 대상 저작물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에 알릴 목적으로 작성한 홍보자료 등에 한정하고 있다.

제5관 저작권의 제한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국가 혹은 지방공공단체의 기관, 독립행정법인 또는 지방 독립행정법인이 일반에게 주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작성하고, 그의 저작 명의 하에 공표하는 홍보자료, 조사통계 자료, 보고서 기타 이에 유사한 저작물은, 설명의 재료로서 신문, 잡지 기타의 간행물에 전제할 수 있다. 다만 이를 금지하는 취지의 표시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32조).

V. 현행법제의 문제점과 입법론

1. 현행 법체계상 문제점

1) 법적지위 관련 문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보고서는 무형적 결과물로 저작자 혹은 과학자의 개개인의 고도의 역량과 능력을 투입하여 창작한 권리가기 때문에 국민의 기본권인 재산권으로 보장되어야 타당하다.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의 하위법령인 대통령령으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동법이 행정부에 위임한 내용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평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설정하도록 위임한 것이지 국민의 재산권 중의 하나인 지식재산권의 귀속관계 까지 규율하도록 위임한 것으로 보기에겐 재검토가 필요하다.¹³⁾

왜냐하면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며 그 내용과 한계는 반드시 법률로 정하도록 우리헌법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제23조 제1항).

게다가, 과학기술정보 서비스와 연구보고서의 제공은 대통령령인 과학기술관련 법령뿐만 아니라 저작권법의 영역에 속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용의 우선순위와 효력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은 대통령령으로서 예외조항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법제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위배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이 저작권법을 구속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2) 공공저작물의 범위와 자유이용 예외

연구기관이 연구보고서의 저작권을 소유한 경우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예외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법적 불일치 문제가 발생한다.

저작권법상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의 예외조항에 해당하려면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3호)에 가능하다.

또한, 공공저작물의 범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만으로 한정함으로써 이용가치가 크고 실질적으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공공기관인 출연(연) 등의 공공저작물은 저작권법상 자유이용 예외조항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반면에 실무지침인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지침」에 따르면 공공저작물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공공기관이 업무상 창작한 저작물을 포함하는 등 법과 실무지침 간 불일치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은 법적지위가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저작권법 상의 별도의 법률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되어야 한다.

2. 제도상 개선(안)

입법론과는 별개로 제도상 개선책으로는 사적자치의 이념을 활용하여 저작재산권 귀속 가이드라인이나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촉진을 위한 계약서 표준(안)을 작성하는 방법이 있다.

1) 연구수행자 저작재산권 귀속 가이드라인

제도상 개선책으로는 연구수행자에게 저작재산권 귀속 가이드라인 제시하는 방법이 있다. 공공저작물의 공

13) 상세한 내용은 강선준 (2013), 「연구계약법론」(진원사), pp.82~83 이하를 참조.

동창작 연구수행자(연구기관)의 원천 기술의 보호 및 부가가치 창출이 예견되는 경우 공공기관 등은 계약을 통하여 연구수행자(연구기관)와 저작권권을 공동소유하거나 연구수행자(연구기관)에게 필요한 저작권 일부를 귀속하여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비영리기관(학교출연(연)) 혹은 대기업 등 대부분의 연구기관은 직무발명규정 및 고용계약서에 저작권의 귀속여부를 사전에 명시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표 7 연구수행자 저작권 귀속사례와 저작권 귀속 가이드라인]

연구수행자 저작권 귀속 사례	저작권 귀속 가이드라인
연구수행기관등과 공동으로 창작한 경우	저작권 공유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아 연구수행기관이 기획하고 창작한 저작물의 경우	저작권 공유 또는 복제권·배포권 등 일부 저작권을 연구수행자에게 귀속
연구수행자의 추가연구를 통하여 새로운 유형의 상품 개발이 예상되는 경우	저작권 공유 또는 복제권·배포권 등 일부 저작권을 연구수행자에게 귀속

2)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촉진을 위한 계약서 표준(안)

공공기금에 의해 생성된 연구 성과물에 대하여 국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여 분쟁을 예방하는 장치를 만들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른 표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영업비밀 및 보안 관련 예외조항을 제외하는 등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

[표 8]의 계약서 표준(안)은 공공기관이 아닌 연구기관 등에 적용하는 표준(안)으로 향후 다양한 표준(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표 8 계약서 표준(안)]

<p>[일반조항]</p> <p>제00조 (저작권의 양도 등)</p> <p>① “연구수행기관 등”이 본 연구용역(예)의 결과로 창작된 산출물(보고서 등) 및 자료의 저작권(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포함한다)을 “공공기관”에게 양도한다.</p> <p>② “연구수행기관 등”이 본 연구용역(예)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3자의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을 양도받거나 이용허락을 받음으로써 “공공기관”이 해당 산출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법적 또는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p> <p>③ 후속적 이용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필요한 경우 “연구 수행기관 등”은 “공공기관”에게 2차적 저작물 작성권에 대한 이용허락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연구 수행기관 등”의 이용허락신청에 대하여 후속적 이용의 목적 등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거절할 수 있다.</p> <p>④ 제3항에 따른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이용허락기간은 “연구수행기관 등”과 “공공기관”이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p> <p>[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p> <p>제○○조(지식재산권 양도 등)</p> <p>① “연구수행기관 등”이 본 연구용역(예)의 결과로 창작된 산출물(보고서 등) 및 자료의 저작권을 “공공기관”에게 양도한다. (단, 새로운 유형의 SW용역 계약의 경우 “연구수행기관 등”에게 저작권 중 복제권·배포권(예시)은 제외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중략)...</p> <p>④ 제3항에 따른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이용허락기간은 “연구수행기관 등”과 “공공기관”이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p>
--

3. 제도개선과 입법론

1) 오픈 액세스 제도 도입을 통한 저작권법 개정

오픈 액세스(Open Access) 제도란 누구든지 온라인상에서 법적·기술적·경제적 제약 없이 자유롭게 학술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개념의 정보유통 모형이다.

상업출판사가 독과점을 통해 주로 영리 목적으로 유통하던 학술정보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함으로써, 학술정보가 인류 학술발전에 공헌하는 본연의 목적을 되찾기 위해 출발하게 되었다.

학술지를 오픈액세스 형태로 발간하면 학회는 보다 쉽게 학술지를 세계에 알릴 수 있고, 이를 통해 SCI(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 SCOPUS(세계우수학술논문 인용지수) 등 세계적인 초록·인용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구 성과물을 오픈하면 전 세계 연구자들이 훨씬 손쉽게 그 성과들을 활용이 가능하다.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관련하여 저작권재산권만을 제한하는 입법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저작권권은 여전히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변형을 통한 폭넓은 이용이 어려움이 있다. 또한, 공공 기금으로 만들어진 다양한 연구 성과물의 공개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고 2차 결과물에 대한 공개 규정도 미비하다.

따라서, 독일처럼 오픈 액세스 제도를 도입하여, 공공기금의 지원을 받고 학술저작물을 작성한 저작자에게 2차적 이용권을 부여하는 입법방식을 부여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미국에 이어 유럽에서도 2016년까지 유럽에서 공적 지원을 받은 연구 성과물의 60%가 오픈 액세스로 접근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4년부터 ‘Horizon 2020’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아 생산된 모든 성과물을 출판사가 직접 올리도록 하거나(Gold Scheme), 혹은 출판 후 6개월 이내(사회과학이나 인문 기고의 경우에는 12개월)에 오픈 액세스 저장소를 통해 제공(Green Scheme) 하도록 하고 있다.

2) 입법론

첫 번째로 국가과학기술정책 총괄규범으로서의 법적용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을 별도의 법률¹⁴⁾로 승격키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과학기술정보서비스 및 연구보고서 공개 등을 저작권법상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조항과 연계하여 조화로운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

두 번째로 학술·과학기술 연구 성과물에 대한 공공적 접근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¹⁵⁾ 제정이다.

14)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을 입법화 하려는 시도는 2008년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舊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제정내용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촉진법」은 그동안 국가연구개발관리에 관한 기본법의 부재로 인해 부처별로 상이한 연구개발관리제도가 운용됨에 따라 발생하는 비효율과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연구자 친화적인 관리체계로 재정립하기 위해 제정·추진되는 범부처 국가연구개발 통합근거 법률로 규정하였다. 「국가연구개발촉진법」이 제정되면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기술료, 지식재산권의 소유·관리,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등이 법률로 규정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기본권 관련된 사항은 법률에 규정되어야 한다는 법리적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舊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 (2008.9.10), “국가연구개발제도를 선진화 할 기본법 만든다 - 국가연구개발촉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

15) 상세한 법(안)의 내용은 별첨을 참조하기 바란다. 우리나라에서도 국가기금이나 공공기금의 출연 또는 지원에 의해 산출된 학술저작물의 자유접근과 이용을 위한 연구가 수행되었고, 그에 따른 법제화 방안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우지숙 박사 등이 연구를 통하여 제시된 사례가 있다. 법(안)명은 「학술·과학기술·정책연구 등에 대한 일반 공중의 접근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으로 아직 입법화 되지는 않았다. 홍재현 (2013), 앞의 논문, p.333, 주37) 재인용. <https://docs.google.com/document/d/1IXPc2sNc0jr4KaF4q9AgTII6p0987>

공공기금에 의해 생성된 연구 성과물에 대한 일반 공중의 자유로운 접근과 이용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기존 법률을 개정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데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입법목적으로는 국가기금이나 공공기금의 출연 또는 지원 등에 의해 산출된 학술분야, 과학기술분야, 정책 분야의 연구성과물에 대한 일반 공중의 접근을 쉽게 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여 학문과 문화의 발전을 촉진 을 목적으로 한다. 공개대상은 국가에 제출된 최종 성과물 및 이것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것으로 학술지 등에 게재되거나 학술저서로 출판된 것을 대상으로 하되,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연구 성과물의 제출 시기는 과학기술기본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등 관련 법령에 의하되, 다른 법률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 연구 성과물의 경우 완료 직후, 학술지에 게재되거나 출판된 후 6개월 이내 제출하도록 규정해야 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법률제정 및 저작권법 개정은 입법적인 기술상, 개정해야 할 기존 법률이 많고, 시간이 소요되는 점, 개정 법률 사이의 상호 관계 등을 고려해볼 때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고 단기적으로는 별도로 「학술·과학기술 연구 성과물에 대한 공공적 접근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이 현실적으로 타당한 입법¹⁶⁾ 방법 이다.

정부 출연(연)이 수행하는 연구사업 중 대부분이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의 통제를 받고 있는 현실과 이미 연구보고서 관련 조항들이 기존의 법령에 잘 규정화 되어있기 때문에 저작권과 연계를 통한 개정이 입 법비용을 줄일 수 있고 법률의 난립을 막을 수 있다.

따라서 국가과학기술정책 총괄규범인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을 법률로 격상시켜 제정하고 저작권법상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제도와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VI. 결론

현대의 지식정보화 사회에서는 과학기술 및 학술적인 저작물은 문화적·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 공공기관 특히 출연(연)의 공공저작물은 지식재산권 상의 제약 혹은 국가의 안전 등에 영향이 없는 한 국민들에게 무상의 자유로운 접근과 이용을 보장해야 한다.

공공저작물이 공유되어야 한다는 인식과 함께 공공 저작물을 활용하고자 하는 수요 등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 요구와 시대적 추세에 따라 학술정보의 오픈 액세스 운동이 확산되어 가고 있다.

우리 정부는 NDSL, NTIS 등 과학기술정보서비스를 통하여 R&D과제 기획, 또는 관련 사업을 조정·평가 할 때 중복투자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고 연구자가 R&D 관련 정보 활용을 극대화 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투자 효율성 향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창출된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연구자와 기업들이 후속 연구, 기술 이전과 실용화 연 구, 사업화를 활발히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뉴미디어의 확산은 새로운 형태의 전자적 정보서비스의 제공을 요구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인 출연(연) 등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으로 수행한 연구보고서 등을 과학기술정보서비스를 통해

vhIt0r9YRhe9c8/edit (2014.9.21방문).

16) 가장 신속한 방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을 개정하는 것이지만, 저작권법 등 관련법과의 법적지위 부분상의 문제, 관련 조항 등을 삽입하는 형태로 규정화하여야 하기 때문에 복잡하고 난해한 모자이크 형식의 입법화가 될 수 있다.

제공하는 경우 창작자의 권리(author's right)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권리(user's right)도 동시에 보장하는 것이 기본원칙이자 중요한 당면과제 이다.

과학기술정보서비스 및 연구보고서 제공은 저작권법과 과학기술 관련 대통령령인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을 기본으로 다양한 법령의 적용과 통제를 받고 있다.

공공기관인 출연(연)의 연구보고서는 지식재산권, 연구보안 등과 관련하여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민간에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제도화 되어야 하지만 현행 관련 법령상 공공저작물의 권리처리 등 관리가 미흡하여 활용과 자유이용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민의 세금에 의해 작성된 출연(연)의 연구보고서 및 과학기술정보서비스 부분은 공공저작물의 범주에서 선진적 유통체계 마련을 위한 법적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입법론과 제도개선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첫 번째로 사적자치 등의 이념을 활용하여 저작권 귀속 가이드라인 및 계약서 표준(안)을 제시해야 한다. 저작권법 등 관련법령을 개정함과 동시에 출연(연)의 연구 성과물을 사적자치 원리에 입각하여 저작권의 가이드라인 혹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촉진을 위한 계약서 표준안을 제시가 필요하다.

둘째로 개별법률 혹은 단일 별도법률로 입법화 하는 방안이다.

오픈 액세스를 저작권 내에 법제화 방안을 검토하고 독일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공공재원의 지원을 받는 출연(연)의 연구보고서 등은 학술저작물을 작성한 저작자에게 2차적 이용권을 부여하는 입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만을 제한하고 있어서 폭넓은 활용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작인격권에 대한 내용을 추가로 검토해야 한다.

단일 법률로 「학술 과학기술 연구 성과물에 대한 공공적 접근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별도의 내용에 대하여 상세하고 자세한 입법을 해야 한다. 현재 제시되는 법률(안)은 학술 정보만을 제한적으로 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작권 법제 등과 연계성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많은 논의와 보완으로 법적 안정성을 제고해야 한다. 이는 후속연구로 다양한 학자들과 함께 공동연구가 필요한 영역이다.

출연(연)이 수행하는 대부분의 연구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특히, 과학기술정보 서비스 및 연구보고서와 관련된 조항은 이미 상당부분 제도적으로 정착이 된 점 제반사항을 고려해볼 때, 저작권법과의 조화로운 입법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기존에 과학기술정보서비스 및 연구보고서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을 법률로 승격시켜 저작권법상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제도와 오픈 액세스 조항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조항을 제정하는 입법방식이 바람직하다.

〈국문초록〉

과학기술 및 학술 연구보고서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입법론 - 저작권법상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제도와 연계를 중심으로-

강선준, 원유형, 최산, 김준혁, 김슬기

현대의 지식정보화 사회에서는 과학기술 및 학술적인 저작물은 문화적·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 공공기관 특히 출연(연)의 공공저작물은 지식재산권 상의 제약 혹은 국가의 안전 등에 영향이 없는 한 국민들에게 무상의 자유로운 접근과 이용을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와 시대적 추세에 따라 학술정보의 오픈 액세스 운동이 확산되어 가고 있다. 우리 정부는 NDSL, NTIS 등 과학기술정보서비스를 통하여 R&D과제 기획, 또는 관련 사업을 조정·평가할 때 중복투자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고 연구자가 R&D 관련 정보 활용을 극대화 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투자 효율성 향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뉴미디어의 확산은 새로운 형태의 전자적 정보서비스의 제공을 요구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인 출연(연) 등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으로 수행한 연구보고서 등을 과학기술정보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경우 창작자의 권리(author's right)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권리(user's right)도 동시에 보장하는 것이 기본원칙이자 중요한 당면과제 이다.

공공기관인 출연(연)의 연구보고서는 지식재산권, 연구보안 등과 관련하여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민간에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제도화 되어야 하지만 현행 관련 법령상 공공저작물의 권리처리 등 관리가 미흡하여 활용과 자유이용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민의 세금에 의해 작성된 출연(연)의 연구보고서 및 과학기술정보서비스 부분은 공공저작물의 범주에서 선진적 유통체계 마련을 위한 법적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입법론과 제도개선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첫 번째로 사적자치 등의 이념을 활용하여 저작재산권 귀속 가이드라인 및 계약서 표준(안)을 제시해야 한다. 둘째로 개별법률 혹은 단일 별도법률로 입법화 하는 방안이다.

오픈 액세스를 저작권 내에 법제화 방안을 검토하고 독일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공공재원의 지원을 받는 출연(연)의 연구보고서 등은 학술저작물을 작성한 저작자에게 2차적 이용권을 부여해야 한다.

단일 법률로 「학술 과학기술 연구 성과물에 대한 공공적 접근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별도의 내용에 대하여 상세하고 자세한 입법을 해야 한다.

출연(연)이 수행하는 대부분의 연구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특히, 과학기술정보 서비스 및 연구보고서와 관련된 조항은 이미 상당부분 제도적으로 정착이 된 점 제반사항을 고려해볼 때, 저작권법과의 조화로운 입법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기존에 과학기술정보서비스 및 연구보고서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을 법률로 승격시켜 저작권법상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제도와 오픈 액세스 조항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조항을 제정하는 입법방식이 바람직하다.

주제어 : 과학기술정보 서비스, 저작권, 지식재산, 오픈 액세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제도

〈Abstract〉

A Study on Improvements on Legal Structure on Security of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Kang Sun Joon, Won Yoo Hyung, Choi San, Kim Jun Huck , Kim Seul Ki

Korea is among the ten countries with the largest R&D budget and the highest R&D investment-to-GDP ratio, yet the subject of security and protection of R&D results remains relatively unexplored in the country.

Countries have implemented in their legal systems measures to properly protect cutting-edge industrial technologies that would adversely affect national security and economy if leaked to other countries. While Korea has a generally stable legal framework as provided in the Regulation on the National R&D Program Management (the “Regulation”) and the Act on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many difficulties follow in practice when determining details on security management and obligations and setting standards in carrying out national R&D projects.

This paper proposes to modify and improve security level classification standards in the Regulation. The Regulation provides a dual security level decision-making system for R&D projects: the security level can be determined either by researcher or by the central agency in charge of the project. Unification of such a dual system can avoid unnecessary confusions. To prevent a leakage, it is crucial that research projects be carried out in compliance with their assigned security levels and standards and results be effectively managed.

The paper examines from a practitioner’s perspective relevant legal provisions on leakage of confidential R&D projects, infringement, injunction, punishment, attempt and conspiracy, dual liability, duty of report to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the “NIS”) of security management process and other security issues arising from national R&D projects, and manual drafting in case of a breach.

The paper recommends to train security and technological experts such as industrial security experts to properly amend laws on security level classification standards and relevant technological contents. A quarterly policy development committee must also be set up by the NIS in cooperation with relevant organizations. The committee shall provide a project management manual that provides step-by-step guidance for organizations that carry out national R&D projects as a preventive measure against possible leakage.

In the short term, the NIS National Industrial Security Center’s duties should be expanded to incorporate national R&D projects’ security. In the long term, a security task force must be set up to protect, support and manage the projects whose responsibilities should include research, policy development, PR and training of security-related issues. Through these means, a social consensus must be reached on the need for protecting national R&D projects. The most efficient way to implement these measures is to facilitate

security training programs and meetings that provide opportunities for communication among industrial security experts and researchers. Furthermore, the Regulation's security provisions must be examined and improved.

Key Words : Legal structure on security issues, Korea's Regulation on the National Research & Development Program Management, Confidential Research Projects, Research security, Industrial Security Expert

참고문헌

1. 論文 및 單行本

강선준 (2013), 「연구계약법론」, (진원사)

김신의 (2014)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활성화 관련 제도 및 활용사례 소개”, 「2014년 제1회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활성화 워크숍 발표자료」(한국문화정보센터)

김종보(2005), “지식재산권 강화경향과 정보공유와의 관계에 대한 고찰 - 헌법이념상 저작권개념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제46권 제1호」,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방석호 (2012) “빅 데이터 시대의 과학기술 데이터 활용을 위한 저작권 법제의 보완”, 「홍익법학 제13권 제4호」(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신주영 (2012) “저작권 침해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 「저스티스 통권 제131호」(한국법학원)

이선희 외 2인 (2012) “디지털 정보 환경과 저작권법 변화에 따른 원문제공서비스 동향분석 및 대응전략”, 「정보관리연구 제43권 제3호」(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이현목 (2011)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저작물의 자유이용허락에 관한 법제도 연구”,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 제5권 제1호」(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정경희 (2007) “기록정보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 문제 연구-정부저작물을 중심으로-“, 「정보관리학회지 제24권 제1호」(한국정보관리학회).

홍재현 (2013), “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 제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4권 제2호」(한국도서관 정보학회).

舊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 (2008), 「국가연구개발제도를 선진화 할 기본법 만든다 - 국가연구개발촉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

미래창조과학부 보도자료 (2014), 「국가연구개발정보, 중소기업과 일반인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개편

미래창조과학부 (2014), 「2014년 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 세부추진계획(안)」

문화체육관광부 (2014),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업무처리요령」

문화체육관광부 (2014), 「공공저작물의 저작권 관리 가이드라인」

문화체육관광부 (2014), 「국내외 공공저작권 관련 입법례」

2. 홈페이지

국가과학기술정보센터 개방형 플랫폼 홈페이지

(<http://nos.ndsl.kr/index.do>, 2014.9.12 방문)

공공누리 홈페이지

(<http://www.kogl.or.kr/>, 2014.9.12 방문)

특허청 홈페이지

(<http://www.kipo.go.kr/>, 2014.9.12 방문)

오픈 액세스 관련 홈페이지

(<https://docs.google.com/document/d/1IXPc2sNc0jr4KaF4q9AgTTI6p0987vhIt0r9YRhe9c8/edit>, 2014.9.21 방문)